

# 「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」 2022년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거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2022년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거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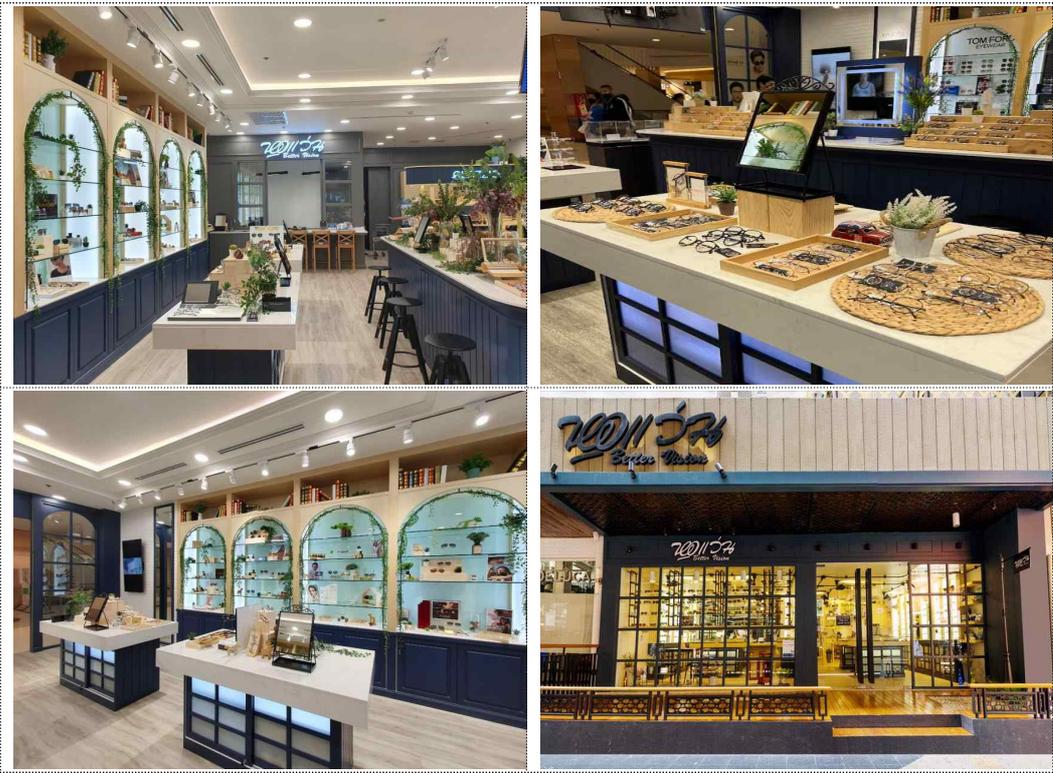
2022년 10월 14일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2년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거점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국내 안경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현지 시장의 유통 노하우가 풍부한 거점사를 국내 아이웨어 기업과 매칭하여 수출확대에 기여 하고자 함
- 모집기간 : 2022. 10. 17(월) ~ 10. 21.(금) 10:00까지
  - ※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
- 모집규모 : 3개 브랜드 이상(거점社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)
- 신청자격 : 국내 자체 상표(브랜드) 및 모델 보유 안경기업
  - ※ 제외사유 : 본공고 유의사항 內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지원기간 : 참여기업 협약체결일 ~ 2022. 12. 31.
- 지원내용 : 해외 신규 시장 진출 지원
  - 해외 현지 거점社 매칭을 통한 쇼룸 내 독립부스 상품 진열
    - ※ 쇼룸 : 현지 샵인샵 또는 단독샵
  - 해외 현지 거점社를 통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 홍보 지원
    - 제품 판매 방식 : 해외 유통거점사가 유상 사입 후 현지 소비자 또는 기타 바이어 대상으로 판매 진행
    - 현지 마케팅 지원 : 해외 유통거점사가 입점된 국내 브랜드를 홍보·마케팅한 내용을 근거로 정산 후 거점사에 지원

## 2. 세부내용

### □ 거점사 소개

구분	태국
업 체 명	Better Vision
소재도시	방콕
거점형태	프랜차이즈 안경점
운영강점	-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- 현지 100여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안경점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가능
사진	

### □ 참여기업 의무사항

- 자체 브랜드 국내생산 제품 공급 필수

## 3. 신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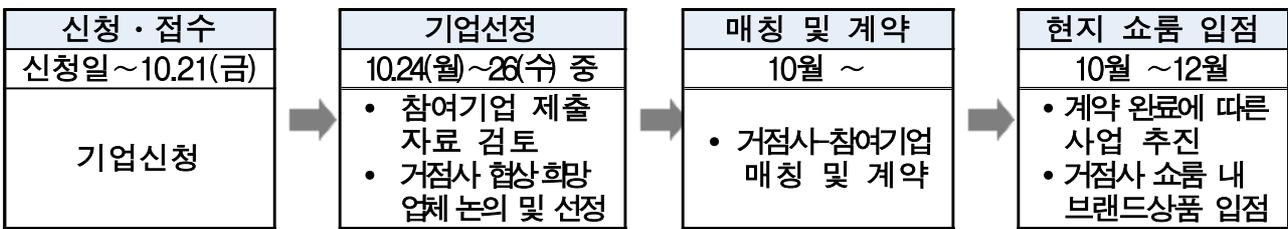
### □ 신청 및 절차

- 신청방법 : 이메일(참가신청서 등 평가서류) ~ 10. 21.(금)까지 제출
  - 사업 담당자 : 전략연구팀 문소영 사원(053-350-7854) [msy@koia.or.kr](mailto:msy@koia.or.kr)
  - 제출서류

No	구분	내용
1	신청서	지정 양식 작성 및 날인 제출
2	기업 소개자료	브랜드 카달로그, 룩북, SNS 주소 등 ※ 이미지 자료의 경우 고해상도 pdf 파일 제출
3	매출액 증빙	최근년도('19년- 21년) 매출액 및 수출실적 증명 각 1부 ※ 직접수출 : 직수출실적증명(한국무역협회 발급) 간접수출 : uTradeHub(www.utradehub.or.kr) 간접수출증명
4	사업자등록증, 상표등록증	사업자등록증, 상표등록증 또는 기타 증빙자료 사본
5	납세증명	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
6	정보제공동의서	지정 양식 작성 및 날인 제출
7	제품샘플	거점사 요청 있을시 제출

※ 해외 유통거점社 대상 공유 정보임

### ○ 운영절차



## 4. 기타사항

### 문의처

사업명	주관부서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한국안경 수출마케팅 지원사업	전략연구팀	문소영 사원	053-350-7854	msy@koia.or.kr

###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안광 학산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
-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. 평가결과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참가 기업의 허위 증빙서류 제출 및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고발조치 등 엄벌 함
- 사업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
- 최종 선정 후에라도 사업 불성실 참여 및 진흥원 요청사항 불이행에 따른 참가자격 상실이 가능 함

지원 제외 대상
-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기업의 부도 또는 휴·폐업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참여기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기업인 경우
- 그 외 개별 세부사업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

□ 붙임

1. 해외유통거점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양식 1부.
2. 개인(신용)정보수집 이용활용 동의서 1부. 끝.